[회계와 사회]

• 주제 :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비영리법인의 회계

<이름: 김재환>

I. 비영리법인의 법률상 정의

1. 법인의 정의

법인(法人)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법인의 권리능력), 권리 주체로서 그 기관(이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행위능력)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한 사람의 집단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단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됩니다.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이 부여된 재산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2.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

공법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국가에 의해 설립되고, 법인의 조직 등이 법률로 정하여지며 기관 및 구성원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하고 해산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반면에 사법인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주로 사단법인 중 영리법인이 아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사법인에 속합니다.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

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그렇지 않은 비영리 법인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사익이 도모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이고, 반대로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전부가 사단법인으로 그 중 전형적인 것은 주식회사로 [상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이고, [민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위하여 특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4.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별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총회가 자기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이 이를 대내외적으로 집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활동합니다. 사단법인은 자치법규(정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관에 따라 해결합니다.

사단 법인에는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과 학술, 종교, 사교 등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이 중비영리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여도 좋으나 이익을 관계자에게 분배할 수 없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설립은 각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의 설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행위하지만 최고 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민법 제69조), 기타 필요에 또라 특히 총사원 5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민법 제70조). 또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상설 필수 기관은 이사입니다. 감사는 필수 기관은 아닙니다.(민법 제66조)

(2)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단체이다.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이 없고 설립자가 제정한 정관이 재단법인의 일반적 의사이다. 또 재단법인 스스로 의사를 형성, 발전시키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타율적, 고정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출현행위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대표 등의 일을 한다. 재단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의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언제나 비영리법인입니다.

Ⅱ. 비영리법인의 정의와 특성

1. 민법에서의 정의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민법 제32조), 즉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 형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설립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반 대중에게 그 혜택을 돌리고자 함입니다. 다만, 반드시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오히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자립을 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2) 법에 의한 권리능력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정관작성 등 설립행위를 하고(민법 제40조),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0조)

그 후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9조 제1항). 이 등기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기위한 성립요건입니다. 이렇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구성원 전부의 이름 대신 법인 명의로 단순화하여 처리하고 단체의 재산과 구성원 또는 업무집행자의 재산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3) 사단성 또는 재단성

사단성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뜻을 같이한 구성원인 회원의 결합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재단성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재산의 결합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단법인은 그 본질상 영리법인이 있을 수 없고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인 경우와 비영리법인인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2. 비영리조직의 특성

비영리조직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영리조직과의 비교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법인의 존립목적 즉 영리추구 여부로 쉽게 구분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1) 사업목적

민법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특별한 언급없이 제 32조에서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비영리법인이라 하고, 제3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을 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사업의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2) 이익분배여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판단기준이라면 이익의 분배 여부에 대한 판단일 것입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지만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의 지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익도 그 구성원에게 분배 또는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에 충당함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은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 또는 배당되어서는 안됩니다.

3) 설립근거법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한 설립근거법이 다릅니다. 현행법상 어떤 단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사단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하고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법]상 인정되는 5종의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한 형태의 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반면 그 비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소속 주무관청마다 규정하고 있는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중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하게 되며 이외에도 의료법인은 [의료법],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특수법인은 각 특수법인의 설립을 규정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준칙주의에 뜨라 상법에 의한 설립이 인정되는 회사와는 크게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설립허가 여부

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이 없이 준칙주의에 드라 법률이 미리 정한

법인설립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상법 제172조)이 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되고 관리, 감독 권한도 주무관청에 있습니다. 이때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 허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시 적용되는 규칙인 [보건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으며,제6조에서 정관변경의허가를,제7조에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매 사업연도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제8조에서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또는 그밖의 참고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있도록하고 있으며,제9조에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제10조에서 해산신고,제11조에서 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을,제12조에서 청산종결의 신고서를 주문관청에제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 규칙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해산, 청산에 이르기 꾸지모든 관리, 감독 권한이 주무관청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5) 잔여재산의 분배 여부

영리법인은 해산결의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여 그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조)

Ⅲ. 비영리법인의 회계

1. 개요

비영리법인은 회계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과 달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비영리조직인 공공기관,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등에 한하여 유형별로 설립근거법에서 별도 고시하는 각각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비영리법인 재무제표의 통일성과 비교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반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비영리조직들 간에 비교가능 할 수 있도록 공통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2003년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준칙' 과 2017년 7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고사항입니다.

반면,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4가 신설되어 공익법인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동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2. 회계처리기준

공공기관,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각 유형별 설립근거법과 설립근거법에서 규정하는 회계처리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별	설립근거법	회계처리규정
공기업 등	정부기업예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 화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학교법인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 국립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 회계규칙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
의료법인	의료법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재무제표세부작성방법(보건복지부고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 계규칙
공익법인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률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 계원칙을 적용, 재무제표 규칙을 준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
종교법인 향교재단	향교재산법, 시행령	규정 없음

기타		
상증법상	다얏	공익법인회계기준(상증법 제50조의 4)
공익법인	43	6 위합한외계기군(8 중합 제30조의 4)

3. 회계처리의 특징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자본이나 잉여금 처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한 후 남은 잉여금을 재투자하는 영리법인의 재무흐름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운영하여 나온 수익과 기부금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이월하여 작년도에 다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무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방법은 영리법인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Ⅳ.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비교

구분	공익법인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제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동 강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기준을 정함
법적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3
적용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결 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 는 기업
적용제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따른 공익법 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재무제표 구성요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재무제표	통합하여 작성하되, 공익목적사업부문	
구분회계	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_
	표시	
દ્યો ભીમી છે	사업비용은 공익목적사업비용과 기타	
사업비용	사업비용으로 구분표시	영업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영업비용)	공익목적사업비용은 사업수행비용, 일	구분표시
표시방법	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표시	
	기본순자산	자본금
키비이	보통순자산	자본잉여금
자본의	- 적립금	자본조정
분류	- 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순자산조정	이익잉여금(결손금)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	
고유목적사	해 미리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동일한	
업 준비금	금액을 부채로 계상 가능	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지	인식 불가
	않고 별도표시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받을 때에는 실	
	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	
기부금	식	
수익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_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	
	본순자산의 증가올 인식	
법인세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회계와 중소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각 회
비용	기업회계처리특례의 법인세 회계처리	계 연도에 부담할 법인세에 이연법인
H1-0	를 고려하여 회계처리	세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
	전시,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	
 유형자산	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	
감가상각	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은 일반적으	_
제외	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	
7,11-1	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음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있	인식시점 이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
	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	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
 유형자산	가를 할 수 있음	택하여 적용
재평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
711 0/1	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수	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중가액은 기
	자산조정으로 인식함. 그러나 동일한	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함. 그러나 동일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운영성과	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

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한 재평가 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록 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 재평가 증가액만큼 운영성과표에 사 큼 당기손익으로 인식 업외 수익으로 인식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 하여 감소된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 하여 감소된경우에 그 감소액은 우영 손익으로 인식함. 그러나 그 유형자산 성과표에 사업외비용으로 인식함, 그 의 재평가로 인해 인식한 기타포괄손 러나 그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해 익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 인식한 순자산조정의 잔액이 있다면 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순 차감 자산조정에서 차감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투자유가증 당기손익으로 인식 당기손익으로 인식 권평가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순자산조정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V. 보고체계

구분	설립관련보고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
니 키 H 키 H 시 크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재산을	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보건복지부산하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 다음사업연도 수입지출예산서
비영리법인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	- 해당사업연도 수입지출예산서
	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 해당 사업연도 재산목록
		기관장은 회계연도가 끝난후 지체
 공기업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
	-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확정한 결산
- 준정부기관 -		서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관할청은 사립학교법 제4조의 규 정에 따름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
		일 이내에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사학기관 사학기관		이사장에게 제출
기탁기단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
		일까지 결산을 심의 확정
		예산과 결산을 해당 관할청에 제출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사학기관		전까지 이사회에 예산안을 제출
(특례규칙	_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적용시)		전까지 이를 심의 확정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 예산안을 편

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ㅇ	기사회에 제출
이사회	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 확정
이사장	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	지 확정된 법인회계 및 학교
회계의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저	· 기출
산학협	력단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
료후	50일 이내에 다음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
출	
- 재무	제표
시청청러다 - 재무	상태표 부속명세서
산학협력단	계산서 부속명세서
- 결산	·부속서류
산학협	력단 단장은 결산서를 학교
의 장-	을 경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실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
의 장이	세게 제출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
터 3월	!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첨부	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
의료기관 - 관에게	제출
크료기단 - 재무	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 손익	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 기본	금변동계산서
- 현금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 개
시 1월	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
인이 실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
성 지침	침을 정하고 매 회계연도 개
시 2월	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
사회복지법인 - 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ㅇ	기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
원회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연도
	1이 되기 기가 그스 그리기
3월 33	1일 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Ⅵ. 참고문헌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기획재정부, 2018.12)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

비영리조직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7.20.)

지원림. [민법강의](서울, 홍문사, 2005) p.89

[법률용어사전] (서울, 현암사, 2006)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 388호, 2015.12.31. 타법개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 2007 4.1.]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일부개정 2010.12.20. 기획재정부령 제177호)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9.9.8. 감사원규칙 제352호)

공공감사기준(1999.9.28. 감사원규칙 제 137호)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시행 2016.1.1.

보건복지부령 제388호, 2015.12.31. 타법개정)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령 제158호, 2018.5.29.,일부개정)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22호, 2017.2.24., 일부개정)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시행 2016.1.29.)[교육부 고시 제2016 - 88호.

2016.1.29.일부개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시행 2019.1.1.](보건복지부령 제 606호.

2018.12.28..타법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시행 2018.3.30..)[보건복지부령 제565호, 2018.3.30.일부개정]